

技術開發支援体制의 強化方案

< 3 >

一承 前一

鄭 俊 石

<商工部 經營指導擔當官室 行政事務官>

④ 技術開發을 위한 現行支援制度

科學 및 技術水準이 先進外國에 비해 떨어져 있게 된 것은 우리의 産業發展이 그만큼 뒤늦게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經濟開發5個年計劃이(1962年) 始作되기 전까지의 政府에 의한 技術開發支援制度는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部分的으로 있다 해도 큰 期待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67年 「科學技術振興法」이 제정됨으로써 本格的인 진흥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에 와서 科學技術處가 設立되고 技術開發促進法(1972年), 特定研究機關育成法(1973年)이 制定됨으로써 技術開發에 관한 基本的인 法制度는 마련된 셈이긴 하나 科學技術支援歷史의 日淺함을 否認할 수가 없다고 보겠다. 技術開發促進法은 民間企業의 自體技術開發 및 技術의 導入, 消化, 改良을 위한 環境의 基盤을 마련한 法이다. 이에 是 技術開發準備金を 積立할 수 있는 근거규정(동법 제3조)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技術開發을 실시하는 企業에 대해서는 資金을 支援할 수 있으며 租稅上의 減免을 줄 수 있는 방향을 提示하고 있다.

特定研究機關育成法(73. 12. 31)에 의하여 設立하게 된 船舶, 海洋, 機械, 電子, 通信 및 石油化學 등 戰略産業의 研究機關을 비롯한 政府出捐의 特定研究機關과 1974년부터 시작한 大德研究團地의 開發은 基礎科學技術開發의 터전이 되어오게 되었다.

直接的인 技術開發에 못지않게 必要情報의 迅速·正確한 蒐集 및 供給을 위해 1962年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가 設立되었고 1969年 한국과학기술육성법의 制定을 계기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현재 800여개의 企業 및 연구소를 會員으로 確保하고 있어 技術開發의 先行段階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技術開發認識의 不足, 效果의 情報提供의 未洽으로 本來의 目的한 바를 充分히 발휘하지 못하

고있는 實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73年 特許法의 全面改正으로 發明을 장려, 보호, 育成함으로써 技術의 發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特許廳은 80年 以後 國際機構(WIPO: 世界知的所有權機構)에도 正式으로 加入하고 先進國과의 技術知識 및 情報의 交流등 開放의 政算으로 國內技術을 더욱 개발장려하려는 方向으로 特許行政을 展開해 오고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科學 및 技術開發의 法制度上 支援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企業의 입장에서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방안이라면 現租稅減免規制法 및 個別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稅制上의 支援과 技術開發을 위한 支援金融과 補助金支給 및 기타 行政上의 支援制度를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稅制上支援制度

가. 技術開發에 대한 支援

(1) 研究 및 職業訓練施設에 대한 特別償却認定

技術의 開發을 위한 연구, 試驗用施設 및 職業訓練施設(建物除外)에 대해서 처음 1회에 한해 그 取得價額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特別償却할 수 있도록(法人稅法施行令 第51條①項6號)하고 있다. 施設設置 初年度에 費用으로 50%까지 인정해 줌으로써 法人稅納入의 負擔을 輕減토록 한 것이다.

(2) 研究施設에 대한 臨時投資稅額控除

技術의 開發을 위하여 附設研究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建物 및 研究施設의 取得에 所要된 金額에 대해 8/100(國產機資材使用의 경우 10/100)만큼 稅額控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法人稅法 第24조의5, 동시행령 제79의 2)

(3) 技術開發準備金制度

技術의 開發 및 革新에 소요되는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技術開發準備金を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當該事業年度 所得金額의 20/100에 相當하는 金額의 범위 안에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도록(租稅減免規制法第4條의 9) 規定하고 있다.

(가) 對象業體

① 製造業 ② 鑛業 ③ 建設業 ④ 技術開發育成法의 규정에 의한 技術用役等 ⑤ 電子計算組織의 利用技術開發 및 情報處理事業 ⑥ 軍需調達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規定에 의한 軍수물자의 加工·整備 및 연구개발사업

(나) 準備金使用 用途

上記對象業體가 材料, 製品, 機械裝置 또는 工程을 改善하거나 새로운 生産方法을 탐구하기 위한 技術開發費, 技術情報費, 技術訓練費, 導入技術消化改良費, 연구시설비, 中小企業技術指導費, 特定研究機關法의 適用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支給하는 出捐金과 其他 技術開發에 關連하여 발생한 비용과 工業所有權의 出願 및 실시, 産業技術研究組合의 育成을 위해 使用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技術開發促進法第4條 및 시행령제7조).

(다) 未使用殘額

準備金設定後 2年間 使用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해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 益金에 算入한 경우와 廢業, 合併 또는 解散, 技術開發準備金を 임의로 使用한 事實이 發見된 때에는 益金에 산입한 액에 대한 소득세(法人稅) 100원에 대하여 日邊 10錢으로 計算한 金額을 소득세(법인세)로 징수한다.

(4) 新技術企業化投資

新技術을 企業化한 事實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事業의 固有目的에 直接使用되는 主된 機密(이에 부수되는 גיע를 포함)에 대하여 投資한 金額의 8/100(국산機資材를 使用한 경우 10/100)에 相當하는 稅額을 控除한

(라) 技術開發準備金 積立·使用現況(單位: 百萬元)

區分 年度	積立額	使用額	業體當 平均積立額	積立業體數
1973	3,135	688	39	80
1974	3,000	1,190	50	60
1975	4,508	1,192	67	67
1976	5,470	3,102	119	46
1977	8,726	2,839 ¹⁾	118	74
1978	29,000	n.a.	207	140

資料: KIEI

註: 1) 1978年 事業年度分

다(租減法第4條의8제4항).

이때 新技術을 企業化한 事業이라 함은

一特許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

一KAIST가 開發한 技術을 최초로 企業化한 事業

一特定研究機關, 企業附設研究機關의 개발성과로서 技術開發審議會의 심의를 거친 것을 말하며 技術개발이 되어 企業化하는 過程에서의 投入施設에 대한 減免惠澤을 부여하고 있다. 이리하여 新기술을 企業化하는데 수반되는 稅制上的 支援을 강구한 것이다.

(5) 技術所得 및 補償金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法人稅法제11조, 所得稅法제5조5호)

使用人이 職務와 關連하여 發明한 優秀發明으로 받은 補償金에 대해서 非課稅하고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을 外國에 양도하거나 貸與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免除하여 주고 있다.

(6) 試驗研究費 및 開發費의 一時損金處理

연구개발시설투자의 간접지원을 위하여 移延資産으로 處理한 試驗研究費 및 開發費를 事業年度의 損金으로 處理할 수 있도록(法人稅法제17조 및 同法施行令제38조) 規定하여 技術개발에 소요된 費用을 損金으로 인정하고 있다.

移延資産으로 處理한 試驗研究費란 製品의 試作, 製法의 研究 등을 위하여 特別히 支出한 費用을 말하고 開發費는 新技術의 開發 및 導入, 新經營組織의 採用, 資源의 開發, 新市場의 開拓을 위하여 特別히 支出한 費用을 말한다.

(7) 指定된 연구기관에 支出한 出捐金, 委託研究費의 損金認定

KAIST 및 KORSTIC에 支給되는 出捐金과 委託研究費는 이를 支給한 個人 또는 法人에 대해 이를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할 수 있으며 科學技術振興法제11조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基金의 助成을 위하여 支給되는 寄附金과 科學技術處長官이 추천하는 個人 또는 團體에 연구비, 연구시설비로 支給되는 寄附金에 대해서도 損金算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公共研究機關의 育成을 支援하고 있는 것이다(租減法第13條 및 제14조의 5항).

나. 人力開發 및 確保를 위한 支援

(1) 職業訓練시설물에 대한 地方稅의 免除

직업훈련기본법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施設에 직접 사용되는 土地와 건물에 관한 등기시의 登錄稅減免(租稅減免規制法 제5조제2항)과 5년간財產稅減免(同法제19조 제4항 13호), 취득세의 減免(同法 제10조 제2항 제24호)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職業訓練分擔金の 損費

職業訓練基本法の 規定에 의하여 職業訓練 촉진기금으로 出捐하는 職業訓練分擔金은 100% 損金認定하고 있어 職業訓練을 통한 人力開發을 助長하고 있다.

다. 國公立研究所 등에 대한 支援

(1) 學術研究用品關稅減免

정부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營하는 研究所나 非營利法人등이 輸入하거나 寄贈받는 研究用機資材에 대하여 關稅를 減免한다.

(2) 技術用役事業者에 대한 所得稅減免

技術用役育成法の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用役者가 技術用役事業에서 發生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事業을 개시한 事業年度에 있어서 事業에서 發生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法人稅의 50/10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3) 特定研究機關의 法人稅減免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政府出捐研究機關의 育成을 위하여 法人稅를 免除함으로써 기초과학기술개발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外國技術導入促進

外國技術提供者에게 支拂되는 代價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課稅는 認可받은 날로부터 5年間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후 3年間은 50/100을 輕減토록 할 수 있다(外資導入法 第24條).

다. 發明品에 대한 所得稅等 減免

1958년에 制定된 發明保護法第6條에 우수한 發明品中 大統領令으로 指定된 品種에 대하여는 그 生産에 있어 營業稅, 所得稅 및 物品稅를 免除토록 規定하고 있으나(發明特許品은 5年, 實用特許品은 3年間) 租稅減免規程法第2條에 發明保護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死文化된 법이나 다름없으며 同施行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品目도 非現實의 일 뿐 아니라 執行面에서도 不可하다고 본다.

全般的으로 稅制上 支援制度는 여러가지로 살펴보았으나 高度技術의 開發段階 및 高度技術人力의 育成, 民間企業베이스에 의한 技術開發支援體制가 더욱 固執되어야 하며 특히 發明보호법의 현실적인 改正이 要求되고 있다.

2. 金融上支援

技術開發에 대한 現行金融上支援은 長期低利技術開發資金과 中小企業에 대한 低利特別資金이 있으며 技術開發株式會社에 의한 softwave分野에 대한 投融資로

크게 區分할 수 있다.

가. 長期低利技術開發資金(產銀)

(1) 對象

- 新技術企業化事業
- 技術開發用役化事業
- 研究所設立 및 試驗研究用物品購入

(2) 融資條件

- 3年据置 5年償還, 年利 18—19%
- 1件當 1000萬원以上 5億원以下

(3) 使用者優先順位

- ① 技術開發準備金を 積立하여 使用하는 者
- ② 自體研究施設을 設置하고 연구개발하는 者
- ③ 政府 企業共同研究事業을 수행한 者

過去支援實積 (단위 : 억원)

年度	76	77	78	79	80	81
金額	30	50	50	70	50	50

나. 技術開發(株)의 投融資

(1) 設立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80.12.31)에 의해 設立하여 81.4 創立總會를 개최, 5.8 부터 업무를 開始하였다.

(2) 主要機能

企業技術開發에 대하여 一般融資, 條件附融資, 株式投資를 통한 技術開發支援

○ 新製品의 研究開發 및 既存製品의 改良, 新工程의 開發, 엔지니어링 技術開發을 위한 研究開發

- 技術導入
- 新製品의 市場進出을 위한 各種弘報調查書
- 新製品의 製造始作
- 製造工程의 改善 및 研究用施設裝備의 購入
- 新技術의 企業化를 위한 앞선업무

(3) 投融資限度

○ 1個 Project當 限度 : 原則적으로 5億원 限度內에서 所要資金의 80%까지 支援

最小限 20%는 當該企業이 負擔 (경우에 따라 5億원以上 支援可能)

○ 1個企業에 대한 支援限度 : 韓國技術開發(株)의 資本金 및 積立金の 20% 以下

○ 大規模 Project에 대한 共同支援 : 國內外各種金融機關 및 企業과 共同參與推進

(4) 投融資財源의 配分

條件附融資의 比重을 점차 증대시켜 나갈.

(5) 投融資條件決定時 考慮事項/Project의 目的, 比較優位, 收益性, 當該企業規模 등 特性을 감안

(6) 81年 용자규모

70億원이상

(7) 特記事項

技術開發過程에 대한 投融資을 실시하여 개발과정에서의 risk를 分散輕減

다. 中小企業에 대한 低利特別資金(2830億원) 中

(1) 資金規模(81年)—150억원

(2) 용자대상 및 條件

(가) 대상—中小企業銀行法上의 中小企業者

(나) 金利 및 償還(基準金利—15%)로써 2年內償還

(다) 1個企業에 대한 融資限度—5千萬원~1億원

(3) 技術開發의 要件

(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新技術을 保有하고 이를 企業化하고자 하는 者

○ 發明特許를 받았거나 實用新案등록이 된 技術

○ 國公立研究機關이 開發한 新技術

○ 自體開發技術로서 國公立研究機關이 추천하는 新技術

(나) 技術革新促進을 위해 아래 各號의 事業을 하는 者

○ 先進外國技術導入業體

○ 海外技術者의 초청 또는 國內技術者의 海外파견

○ 技術開發을 위한 用役

라. 技術輸出에 대한 金融支援

技術輸出의 경우(契約金額—先受金)×80% 범위내의 金額을 韓國輸出入銀行이 融資하여 주고 있다.

3. 行政支援등

가. 國產新技術製造業者保護

自體開發한 新技術이나 導入技術의 消化改良에 의하

여 國內에서 生産된 제품의 제조업자를 保護하기 위하여 技術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科技處長官이 認定하는 경우에는 1年 以上 5年의 범위내에서 類似製品의 輸入 및 重複製造를 規制하고 있다.

나. 國內開發技術의 告示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은 自主的 技術開發促進을 위하여 國內開發이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技術을 告示할 수 있으며 告示된 技術에 대하여는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거 一定基準以下의 技術導入을 認可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 技術導入自由化措置

78年11月 제1단계의 技術導入自由化措置에 따라 기술도입계약의 認可는 自動認可事項으로 區分하여 심사사항이 크게 축소된 이후 79年4月의 제2단계自由化조치는 더욱 強化되어 技術導入을 支援해 주고 있다.

라. 工業所有權의 使用特例

政府가 委託하여 遂行한 研究開發의 成果로서 政府에 所屬된 工業所有權中 産業開發에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研究開發用役을 政府와 共同으로 投資한 者에 대하여 無償으로 이를 讓渡하거나 實施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하여 주고 있다.

마. 發明獎勵制度

特許廳에서는 每年 우수발명에 대하여(登錄된 特許, 實用新案權) 施償을 함으로써 發明者의 士氣振作은 勿論이고 國際發明品大會에도 出品케 함으로써 外國에까지 普及·擴大에 여러가지 行政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韓國특허협회는 初中高中生에 대한 發明作文募集을 실시하여 장래의 조국을 깊어질 어린 학생에게 發明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계속—

알

天一社電子

칼러 TV 商標 變更

天一社電子産業株式會社(代表: 朴暘均)는 칼러 TV 商標를 天一早로칼러에서 에로이카오로칼러로 變更했다.

에로이카로의 商標變更은 오디오製品에 에로이카商標를 使用하고 있을 뿐아니라 消費者들로부터도 좋은 反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日新製鋼

石油試錐用鋼管 API 承認獲得

日新製鋼株式會社(代表: 朱昌均)는 API 美國石油協會로부터 石油試錐用鋼管에 대한 生産承認을 얻었다.

이로써 同社가 API 生産承認을 받은 鋼管은 送油用鋼管, 高壓送油用鋼管, 石油試錐用鋼管 등 모두 3個로 늘어나 더욱더 對美輸出을 增大할 수 있게 되었다.

림

三星電子

特殊機器事業本部 永東移轉

三星電子工業株式會社(代表: 姜晋求)는 特殊機器事業本部를 永登浦區大方洞에서 永東區驛三洞所在 韓國科學技術會館으로 옮겼다.

電話番號 555—7535 · 5447